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44호)

제안 설명



2020. 1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비록 연기되었지만,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와 욱일기를 표현한 유니폼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일본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와 위안부·강제징용 등 침탈 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반인륜적 과거사를 상품화 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방송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디자인 된 옷 등을 착용해 문제가 되었듯이 일본의 식민사관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지양에 관련 문화조성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